

#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 ▣ 개정조례안 접수 및 처리

- 접 수 : 1996. 12. 21. (의안번호 428)
- 상임위원회회부 : 1996. 12. 24.
- 상임위원회심사 : 1996. 12. 26.
- 의 결 : 1996. 12. 28. (수정의결)  
(제20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 조례안 이 송 : 1996. 12. 28.

## ▣ 재의요구경과

- 조례안접수일(이송받은날) : 1996. 12. 30.
- 집행부에서 도예보고 : 1997. 1. 4.
- 도에서 재의요구지시 : 1997. 1. 18.

### [재의요구 지시이유]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한 사항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벗어난 것이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한 사항은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한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서,

[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위반이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함.]

## ▣ 재의요구일 (충주시장) : 1997. 1. 20.

○재의요구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3항

○재의요구법정기한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 (97년 1월 19일이나 1월 19일이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59조,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0일까지 임.)

## ▣ 재의요구안 처리절차

○재의기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재의요구안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  
(이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재의방법 :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상정(조례안 재의의건) → 재의요구이유설명청취 → 질의·토론  
→ 기립표결(수정안)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56조)

## ▣ 충청북도의회 재의요구처리 (예)

○안 전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안 전 상정 : 충북도의회 제123회 제2차 본회의 → 수정의결 (기립표결)  
('96. 3. 16.)

○재의요구사항 : 충북도의회 제120회 본회에서 의결한 동안전은 내무부에 보고한 결과 '96. 1. 4.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

○재의요구이유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96. 12. 30.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로 전문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재의요구

▣ 불 임 : 1. 조례안재의요구시의회의수정의결여부에관한질의답변내용 1부.

2.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1부.

## 조례안 제의요구시 의회의 수정의결 여부에 관한 질의답변 내용

- |                                |
|--------------------------------|
| • 질의 :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 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 • 답변 : 내무부지방계획과 이재철            |

### ■ 질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제의요구시 일부제의 또는 수정제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수정의결한 경우 새로운 안전에 대한 의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 답변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제의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의결시 그 의결정족수를 일반안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때,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제의요구에 대하여 수정의결은 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장의 제의요구에는 그 원권이나 법령위반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제의요구서에 명시된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제의결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을 경우 원래의 제의요구대상인 원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의안에 대한 의결로 보아(이에 따라 제의결 정족수 불요), 그에 대하여 제의요구등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참고자료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 95법제처 발간 )

##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안

개정	수정안
제1조 - 제17조 (생략)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1 - 10 (생략)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u>위험물 관</u> <u>매취급소</u> 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 는 주유소로서 중, 개축에 한한다.) 12 - 16 (생략) 제19조 - 제27조 (생략)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 다. 1 - 2 (생략) 3. 균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탁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 인 것에 한한다.) 4 - 14 (생략) 제29조 - 제47조 (생략) 부칙 (생략)	제1조 - 제17조 (개정안과 같음)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 -- -- -- --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 (석유 및 가 스판매소-----) 12 - 16 (개정안과 같음) 제19조 - 제27조 (개정안과 같음)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 -- --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탁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 다.) 4 - 14 (개정안과 같음) 제29조 - 제47조 (개정안과 같음) 부칙 (개정안과 같음)

# 관 계 법령

## [ 건축법 ]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시행령 ]

제6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

2.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개정 96.2.22>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 제1항 제2호관련)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3] <개정 96.2.22>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 제1항 제12호관련)

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 개정조례 ]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로서 중, 개축에 한한다.)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3.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 민법 ]

제155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忠清北道議會會議錄

## (第123回 臨時會)

忠清北道議會

겠습니다.

金春植 議員으로부터 發議된 同 條例案에 대하여 否決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金春植 議員이 發議한 同 條例案은 否決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성립된 同 條例案을 否決하자는 동의에 대한 表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否決하자는 찬성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9名 起立)

예, 앉으시죠. 반대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에서 審查한 대로 議決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議員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名 起立)

앉으시죠. 金春植 議員이 發義한 同 條例案에 대한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19名, 반대가 12名, 기타 3名으로서 충청북도경인자동차조례증개정조례안은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忠清北道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參 照 >

· 忠清北道牽引自動車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查報告書(建設交通委員會)

· 忠清北道牽引自動車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忠清北道)

· 忠清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建設交通委員會)

· 忠清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忠清北道)

(以上 4件은 附錄에 실음)

· 5.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再議의件 (忠清北道知事提出)

(12時08分)

○議長 車珠元 議事日程 第5項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再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再議要求된 本 條例案은 1995年 11月 10日 忠清北道知事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12

月 16日 第120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서 원안대로 可決하여 이송하였으나 관련 법령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1996年 1月 8日 忠淸北道 知事로부터 再議要求되어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道 關係官께서는 나오셔서 再議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碩儀 企劃管理室長  
李碩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항상 道政發展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議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忠淸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 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再議要求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을 再議要求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年 11月 11日 忠淸北道知事의 發議로 同年 12月 16日 忠淸北道議會 第120回 定期會에서 議決되고, 同年 12月 18日 道知事에게 이송되어 地方自治法 第21條의 規定에 의거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한 결과 '96年 1월 4日 同法 第1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의 再議要求가 있어 同法 第98條의 規定에 의거 再議要求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同 條例案은 도내 농

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同 條例案 第4條 第1項에서는 적립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관단체·독자가 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3.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회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第4條 第2項에서는 운용기금의 재원으로서 1. 적립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기타 지원금 및 성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同 條例案을 再議要求하게 된 理由를 말씀드리면 '95年 第120回 定期會에서 議決해주신 忠淸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 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95年 12月 30日 法律 第5126號에 의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허가 대상이 강화되어 同法 第5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등」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同 條例案을 새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재의결해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再議要求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기대하오며 이상으로

10 (第123回 — 第2次)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設置 및 運用  
管理條例案再議要求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車珠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道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再議要  
求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再議要求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 안건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신  
지 議員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喜福 議員 議席에서 舉手)

예, 李喜福 議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李喜福 議員 農林水產委員會 李喜  
福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  
러분!

本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은 지난 第120回 定期會  
第1次 農林水產委員會에서 審查하여 同  
會期 第5次 本會議에서 議決하여 道知事  
에게 이송하였으나, 本 條例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  
이 있어 忠清北道가 再議要求하게 된 것  
입니다.

本 再議요구안에 대하여 그동안 農林水  
產委員會에서는 第121回 및 第122回 臨時

會 農林水產委員會 간담회에서 忠清北道  
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協議를 하였습  
니다.

本 條例案은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생  
활개선회, 4-H후원회의 후원기금을 조성  
하여 전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  
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WTO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자 의욕을 갖고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本 條例 改正內容中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第4  
條 第1項 2號 『기관단체·독지가가 기탁  
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자산』을 삭제  
하고, 第2項 2號 『기타 지원금 및 성금』  
을 『기타 지원금』으로 수정 議決하여 농  
촌전문인력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提案합니다.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시어 本議員  
이 提案한 대로 수정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執行部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再議要  
求가 議會에 제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12月 30日 날

공포됐다고 하지만立法豫告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지 못하  
고 농촌진흥원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무  
성의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  
되는 사례가 있어서 執行部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議決한 사항이 再議要求가  
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있  
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車珠元 農林水產委員會 李喜  
福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議員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李喜福 議員께서  
동의한 既 議決된 원안중 관련 법령 위반  
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案에  
대하여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再請이 있으시므로 既 議決된 原案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案은 議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  
고자 합니다.

그러면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  
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에 대하여 表決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成基金設

置 및 運用管理條例案을 수정해서 可決하자  
는데 찬성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  
랍니다.

(28名 起立)

예, 앉으시죠.

다음 同 條例案을 修正해서 처리하는데  
反對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名 起立)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  
員 31名中 찬성 28名,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3名으로 忠清北道農村專門人力育  
成基金設置 및 運用管理條例案再議의 件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  
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會期는 5日의 일정이지만 執行部  
에서 提出된 條例案 등 案件處理는 물론  
內務委員會에서는 문화재보존실태 및 청  
소년 수련시설을, 教育社會委員會에서는  
제천, 단양 등 겨울 가뭄대책지역을, 農  
林水產委員會에서는 농정관련사업소와 유  
관기관을,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육상골  
재체취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등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第123回 臨時會를 마치면 다